

연구보고(수시과제) 07-R18

#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책임연구원 : 김 경 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서 정 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정 익 중(덕성여자대학교 ·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특별지원 대상 표적집단으로 추정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규모와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특별지원청소년 정책 수행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이를 토대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특별지원청소년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음.

## 2. 주요 연구내용

- 특별지원청소년 생활실태 : 주거형태는 월세(24.0%)나 전세(20.0%)가 가장 많고, 편부모(34.8%)나 조부모 가정(16.3%)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많음. 생활수준은 73.7%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생활비 조달은 부모(51.0%) 이외에 아르바이트(10.1%)를 통한 조달이 가장 많았음.
- 특별지원청소년 위기 실태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 69.7%, 우울·불안 59.1%, 약물사용경험 3.3%, 술·담배경험 46.0%, 성관계경험 10.0%, 범죄경험 30.5%, 부부폭력경험 24.3%, 아동학대경험 32.6%, 부모갈등경험 64.9%, 부모형집행경험 5.5%, 가족빈곤경험 64.2%, 부모알코올중독경험 18.1%, 부모정신질환경험 16.0%, 술·담배경험 있는 친구 48.7%, 약물하는 친구 4.9%, 폭력써클 가입 친구 13.9%,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24.8%, 교사갈등경험 36.4%, 낮은 성적경험 68.5%, 학교무단결석경험 52.1%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받고 있는 지원과 향후 필요한 서비스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들이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은 생활지원(40~50%)과 상담지원(30% 내외)이 가장 많

으며, 청소년활동지원(10% 내외), 학업지원(20% 내외), 자립지원 등(20%내외)은 매우 낮음. 향후 필요한 서비스로는 청소년활동지원, 학업지원, 상담지원, 자립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특별지원 청소년의 규모를 살펴보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 청소년의 경우에 2,820명으로 추정됨. 이를 서비스 내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생활지원 624건, 건강지원 1,856건, 학업지원 2,612건, 자립지원 3,128건, 상담지원 2,564건, 법률지원 324건, 청소년활동지원 2,864건, 기타 지원 104건 등 총 13,972건임.

### 3. 정책제언

-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절차는 최초 발굴에서 급여 신청, 기초생활실태조사, 상담 및 세부조사, 1차 선정,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선정, 수급자 관리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임. 위급성 때문에 지체없이 지원 결정한 경우에 사후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연장 결정,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친권자에게 비용의 징수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함.
- 특별지원청소년 지원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바우처 제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형태인 묵시적 바우처(implicit voucher)의 형식으로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음.
- 또한 청소년중에 부가기능으로 구성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청소년증은 할인혜택을 제공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선불카드처럼 현금을 충전할 수도 있음. 또한 이에는 전화카드기능, 버스 및 전철카드기능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음.
-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바우처로 인해 어느 정도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며, 특별지원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음.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4
3. 연구방법 .....	4
II.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의 개요 .....	7
1.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의 목적 .....	9
2. 특별지원청소년제도의 주요내용 .....	9
III. 특별지원청소년 생활과 지원실태 .....	1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5
1) 조사대상 청소년 분포 .....	15
2) 조사대상 가족 및 보호자 .....	17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생활실태 .....	19
1) 주거생활 .....	19
2) 생활실태 .....	22
3) 건강상태 .....	24
3. 특별지원청소년 위기 실태 .....	25
1) 자아존중감 .....	25
2) 우울·불안 .....	26
3) 약물사용 .....	26
4) 지능 .....	27
5) 술·담배 경험 .....	28
6) 성관계 경험 .....	29

7) 범죄경험 .....	30
8) 부부폭력 경험 .....	31
9) 아동학대 경험 .....	31
10) 부모 갈등 경험 .....	32
11) 부모 형집행 경험 .....	33
12) 가족빈곤 경험 .....	33
13) 부모 알코올중독 경험 .....	34
14) 부모 정신질환 경험 .....	35
15) 술담배 경험 있는 친구 유무 .....	36
16) 약물 하는 친구 유무 .....	37
17) 폭력써클 가입 친구 유무 .....	38
18)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	39
19) 교사 갈등 경험 .....	40
20) 낮은 학교성적 경험 .....	41
21) 학교무단결석 경험 .....	42
4.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실태 및 필요성 .....	43

#### IV.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지원·관리 .....

1.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	49
1) 대상자 선정과정 .....	49
2) 대상자 선정기준 .....	54
3) 대상자의 사정 .....	59
2.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내용 및 전달체계 .....	63
1) 지원의 종류 .....	63
2) 지원의 지급방식 .....	69
3) 지원의 전달체계 .....	71
4)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	71

3. 특별지원청소년의 관리 .....	74
1) 대상자 등록 및 정보보호 .....	74
2) 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관리 .....	75
3) 부양의무자의 의무 확인 .....	77
 V. 결론 .....	 81
1. 특별지원청소년 규모 및 지원 대상 .....	83
2.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절차 .....	84
3.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방법 .....	87
 부    록 .....	 89
특별지원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	91

## 표 목차

<표 II-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유형 및 규모 .....	10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5
<표 III-2> 지역별 분포(광역단위) .....	16
<표 III-3> 위기유형 분포(복수응답) .....	16
<표 III-4> 가족구성 .....	17
<표 III-5> 부모결혼상태 .....	17
<표 III-6>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유무 .....	18
<표 III-7> 보호자 직업유무 .....	18
<표 III-8> 보호자 부양능력 .....	19
<표 III-9> 보호자 방임 및 학대 여부 .....	19
<표 III-10>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주거형태 .....	20
<표 III-11>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동거여부 (복수응답) .....	21
<표 III-12> 수급여부별 생활수준 .....	22
<표 III-13>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생활비 조달방법 .....	23
<표 III-14>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건강상태 .....	24
<표 III-15>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낮은 자아존중감 .....	25
<표 III-16> 성별 우울·불안 .....	26
<표 III-17>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약물사용(본드, 부탄 등) .....	27
<표 III-18> 낮은 지능 .....	27
<표 III-19>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술, 담배 여부 .....	28
<표 III-20>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짝은 성관계 .....	29
<표 III-21>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범죄경험 .....	30

<표 III-22> 수급여부별 부부폭력 .....	31
<표 III-23> 수급여부별 아동학대 .....	31
<표 III-24>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부모와의 갈등 ...	32
<표 III-25> 수급여부별 부모의 형집행(교도소) .....	33
<표 III-26>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가족빈곤 .....	34
<표 III-27> 수급여부별 부모의 알코올중독 .....	35
<표 III-28> 수급여부별 부모의 정신질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	35
<표 III-29>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술, 담배 피는 친구 많음 .....	36
<표 III-30>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약물 하는 친구 많음 .....	37
<표 III-31>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폭력씨클에 가입된 친구 많음 .....	38
<표 III-32>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집단따돌림 피해 .....	39
<표 III-33>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교사와의 갈등 .....	40
<표 III-34>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낮은 학교성적 .....	41
<표 III-35>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학교무단결석 .....	42
<표 III-36> 대상 청소년의 지원서비스와 지원기관, 필요한 서비스 .....	44
<표 IV-1>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 발굴 경로 .....	50
<표 IV-2> 조사목적별 제출서류의 목록 .....	61
<표 IV-3> 급여의 종류 요약 .....	67
<표 V-1> 서비스 내용별 지원대상 .....	83

## 그림 목차

[그림 II-1]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규모 .....	11
[그림 IV-1]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업무의 흐름도 .....	49
[그림 IV-2] 대상자 유형별 지원 흐름도 .....	52
[그림 IV-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절차 요약 .....	54

#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을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③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청소년을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시의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개념적인 혼란과 타 부처와의 중복지원 문제 등은 현재까지 법 시행을 미루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고 법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별지원청소년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성 확보와 타 부처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해 왔으며, 이를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작업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특별지원청소년의 대상 선정과 지원이 보다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

와 욕구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별지원 대상 표적집단으로 추정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규모와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특별지원청소년 정책 수행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 집단의 규모와 실태, 선정절차,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첫째, 특별지원청소년 대상 집단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였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특별지원청소년 관련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였다.

둘째,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절차를 분석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정절차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방법을 검토하였다. 특별지원청소년 운영에 있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접지원, 청소년생활복지바우처제도, 현물지원 등의 지원방법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 3.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분석, 수요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첫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사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또한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우처제도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특별지원청소년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지원청소년 관련 시설 대상으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통하여 청소년의 상황과 청소년보호자, 청소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시설보장에 의한 지원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의 고유서비스가 종료된 청소년 중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본래의 고유서비스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상담, 위기개입 등 청소년,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퇴소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7년 1분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2007년 4~5월 중에 실시되었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청소년동반자 포함)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청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통하여 자기보고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우편조사로 이루어졌다.

셋째, 국가청소년위원회 담당 공무원, 청소년복지 및 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구성을 통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분석하고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Ⅱ.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의 개요

1.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의 목적
2.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의 주요내용



## II.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의 개요

### 1.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의 목적

헌법 제34조 4항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03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일반청소년은 물론 가출·학업중단·비행·저소득계층·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직업능력 강화 등을 통해 자립·자활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지원청소년 제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타 법령이나 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요보호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2. 특별지원청소년 제도의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의 1항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대상을 네 부류로 유형화하고, 시행령 제8조에서는 유형화된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령에서 새롭게 규정한 네 가지 선정기준은 첫째, 「가출, 범죄·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 및 자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둘째, 「“초·중등교육법”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셋째,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넷째,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적 보호지원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이다. 시행령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대상은 가출청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비행·보호시설 퇴소청소년, 범죄·폭력피해 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교정시설 재소자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및 혼혈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기타 위기청소년 등이다. 특별지원청소년의 전체적인 규모는 컴퓨터이용청소년 7,672명, 상담지원센터 위기청소년 10,336명, 학업중단청소년 2,113명, 범죄피해 청소년 32,861명,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12,682명, 범죄청소년 8,955명, 새터민 청소년 636명, 다문화가정 청소년 18,041명, 방임·학대받는 청소년 12,120명, 교정시설 재소자 자녀 2,096명으로 총 107,51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윤철경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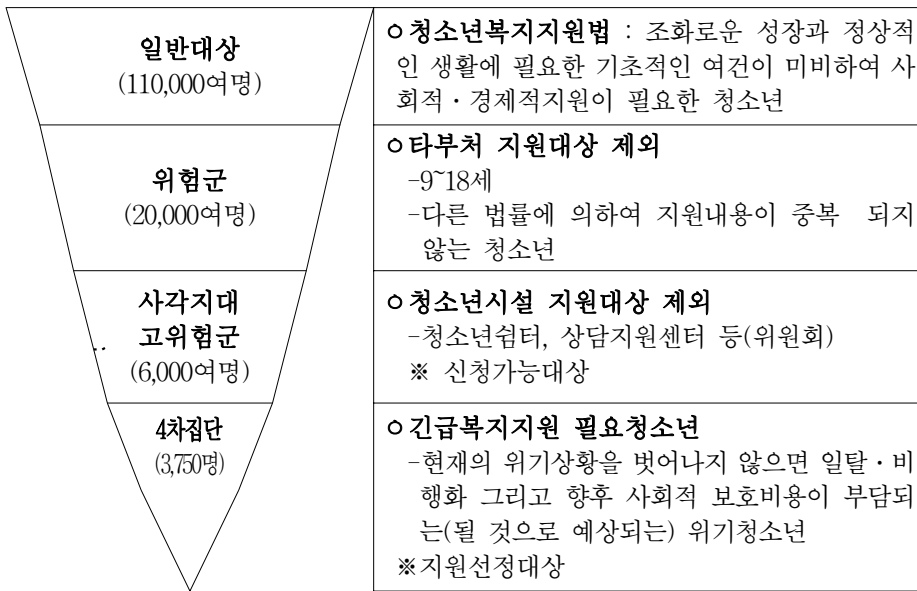
<표 II-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유형 및 규모

단위: 명

특별지원청소년 대상 유형	전체	연령별		가정경제수준별	
		9-18세	19-24세	기초수급 (9-18세)	기초수급 이상
컴퓨터이용 청소년	7,672	7,436	236	1,014(907)	6,658
상담지원센터 위기청소년	10,336	9,178	1,158	3,339(3,038)	6,997
학업중단청소년	2,113	402	1,711	184	1,929
범죄피해 청소년	32,861	25,910	6,951	7,959	24,902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12,682	8,045	4,637	1,204	11,478
범죄 청소년	8,955	8,519	436	1,810	7,145
새터민 청소년	636	435	201	222	414
다문화가정 청소년	18,041	9,774	8,267	1,127	16,914
방임, 학대 청소년	12,120	10,572	1,548	3,854	8,266
교정시설 재소자 자녀	2,096	1,488	608	960	1,136
총 계	107,512	81,759	25,753	21,763	85,839

또한 특별지원청소년을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정의에 기초한 인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대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철경

외,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정의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접근 가능한 모든 청소년은 앞서 살펴본 약 110,000명이며, 9-18세 청소년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지 않는 청소년은 20,000여명이다. 또한 위험군 청소년 중 쉼터와 상담지원센터 등 기존 청소년시설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규모는 6,000여명이며, 접근 가능한 대상은 3,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II-1]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규모

또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은 법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타 법령의 지원내용과 차별화하여 특별지원청소년에게 필요한 모든 종류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넓게 지원의 종류를 확대, 또한 지원의 순서를 시급성의 순서로 바꾸는 등의 재구성을 하였다. 법안 개정을 통하여 지원내용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기타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 Ⅲ. 특별지원청소년 생활과 지원실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생활실태
3. 특별지원청소년 위기 실태
4.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실태 및 필요성



### Ⅲ. 특별지원청소년 생활과 지원실태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 청소년 분포

#####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53.8%, 여자 46.2%였고, 연령별로는 8세~12세 8.9%, 13세~18세 79.0%, 19세~24세 12.1%였다. 신분별로는 학생 71.2%, 비학생 28.8%로 학생이 2배이상 많았다.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자	379	53.8
	여자	325	46.2
	소계	704	100.0
연 령 별	8세이상-12세이하	62	8.9
	13세이상-18세이하	549	79.0
	19세이상-24세이하	84	12.1
	소계	695	100.0
신 분 별	학생	488	71.2
	비학생	197	28.8
	전체	685	100.0
수 급 여 부	예	243	35.3
	아니오	323	46.9
	모르겠다	122	17.7
	소계	688	100.0
기 관 별	청소년 쉼터	202	28.7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503	71.3
	소계	705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가 35.3%, 비수급자가 46.9%였으며, 소속기관별로는 청소년 쉼터가 28.7%,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71.3%였다.

(2) 지역별 분포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3.1%, 부산 1.6%, 대구 3.4%, 인천 3.1%, 대전 2.7%, 광주 3.1%, 울산 1.3%, 경기 17.0%, 강원 7.0%, 충북 6.8%, 충남 7.1%, 전북 7.0%, 전남 3.4%, 경북 7.7%, 경남 24.1%, 제주 1.7%였다. 경남 지역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지역이 1.6%로 가장 적었다.

<표 III-2> 지역별 분포(광역단위)

구분	지역(광역단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빈도	22	11	24	22	19	22	9	120	49	48	50	49	24	54	170	12	705
	%	3.1	1.6	3.4	3.1	2.7	3.1	1.3	17.0	7.0	6.8	7.1	7.0	3.4	7.7	24.1	1.7	100.0

(3) 위기유형 분포

위기유형 경험별로 살펴보면, 가출 경험 41.1%, 학업중단 25.4%, 비행 31.5%, 범죄 10.9%, 학교폭력피해 6.4%, 범죄피해 3.1%, 방임·학대 29.2%, 교정시설재소자자녀 0.9%, 다문화가정 1.7%, 약물·인터넷중독 6.2%, 기타 30.0%였다.

<표 III-3> 위기유형 분포(복수응답)

구분	위기유형											
	가출	학업중단	비행	범죄	학교폭력피해	범죄피해	방임·학대	교정시설재소자자녀	다문화가정	약물·인터넷중독	기타	
예	빈도	290	179	222	77	45	22	206	6	12	44	211
	%	41.1	25.4	31.5	10.9	6.4	3.1	29.2	0.9	1.7	6.2	30.0
아니오	빈도	415	526	483	628	660	683	499	699	693	661	493
	%	58.9	74.6	68.5	89.1	93.6	96.9	70.8	99.1	98.3	93.8	70.0
전체	빈도	705	705	705	705	705	705	705	705	705	705	70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 조사대상 가족 및 보호자

### (1) 가족구성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양친부모가정 29.8%, 편모가정 19.0%, 편부가정 28.8%, 조부모가정 10.2%, 기타 12.3%였다. 양친부모가정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편부가정 28.8%, 편모가정 19.0%, 기타 12.3%, 조부모가정 10.2% 순이었다.

<표 III-4> 가족구성

구분		가족구성					전체
		양친부모가정	편모가정	편부가정	조부모가정	기타	
전체	빈도	208	133	201	71	86	699
	%	29.8	19.0	28.8	10.2	12.3	100.0

### (2) 부모결혼상태

부모의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결혼 26.4%, 별거 6.4%, 이혼 43.8%, 사별 8.4%, 재혼-양부 3.8%, 재혼-양모 5.9%, 부모없음 5.3%였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결혼 26.4%, 사별 8.4%, 별거 6.4%, 재혼-양모 5.9%, 부모없음 5.3%, 재혼-양부 3.8%순이었다.

<표 III-5> 부모결혼상태

구분		부모결혼상태							전체
		결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양부	재혼-양모	부모없음	
전체	빈도	183	44	308	58	26	41	37	692
	%	26.4	6.4	43.8	8.4	3.8	5.9	5.3	100.0

(3) 보호자 유무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유무를 살펴보면,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가 있는 경우가 91.9%, 없는 경우가 5.9%, 모르겠다는 경우가 2.3%를 차지하였다.

<표 III-6>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유무

구분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유무			전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빈도	643	41	16	700
	%	91.9	5.9	2.3	100.0

(4) 보호자 직업유무

보호자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경우가 61.1%, 직업이 없는 경우가 30.1%, 모르겠다는 경우가 8.8%였다.

<표 III-7> 보호자 직업유무

구분		보호자 직업유무			전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빈도	426	210	61	697
	%	61.1	30.1	8.8	100.0

(5) 보호자 부양능력

보호자의 부양능력을 살펴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가 48.3%,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41.6%, 모르겠다는 경우가 10.1%를 차지하였다.

<표 III-8> 보호자 부양능력

구분		보호자 부양능력			전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체	빈도	335	289	70	694
	%	48.3	41.6	10.1	100.0

(6) 보호자 방임 및 학대여부

보호자 방임 및 학대여부를 살펴보면, 매우 심한 편이다 13.0%, 심한 편이다 29.5%, 보통이다 27.2%, 없는 편이다 19.1%, 전혀 없다 11.3%로, 방임 및 학대 경험이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30.4%)보다 심하거나 심한 편인 경우(42.5%)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보호자 방임 및 학대 여부

구분		보호자 방임 및 학대 여부					전체
		매우 심한 편이다	심한 편이다	보통이다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전체	빈도	90	204	188	132	78	692
	%	13.0	29.5	27.2	19.1	11.3	100.0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생활실태

1) 주거생활

(1) 주거형태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월세 24.0%, 전세 20.0%, 자가 28.4%, 시설거주 8.9%, 기타 18.7%로, 자가 비율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월세 24.0%, 전세 20.0%, 기타 18.7%, 시설거주 8.9% 순이었다.

<표 III-10>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주거형태

구분			주거형태					전체	x <sup>2</sup>
			월세	전세	자가	시설 거주	기타		
성별	남	빈도	73	77	123	34	57	364	17.598**
		%	20.1	21.2	33.8	9.3	15.7	100.0	
	여	빈도	89	58	69	26	69	311	
		%	28.6	18.6	22.2	8.4	22.2	100.0	
연령	8세이상- 12세 이하	빈도	17	15	13	2	11	58	16.910*
		%	29.3	25.9	22.4	3.4	19.0	100.0	
	13세이상- 18세 이하	빈도	119	112	156	48	91	526	
		%	22.6	21.3	29.7	9.1	17.3	100.0	
	19세이상- 24세 이하	빈도	21	6	23	9	23	82	
		%	25.6	7.3	28.0	11.0	28.0	100.0	
학생 여부	예	빈도	109	97	156	38	71	471	23.169***
		%	23.1	20.6	33.1	8.1	15.1	100.0	
	아니오	빈도	48	35	34	19	52	188	
		%	25.5	18.6	18.1	10.1	27.7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수급 여부	예	빈도	78	42	46	24	46	236	74.581***
		%	33.1	17.8	19.5	10.2	19.5	100.0	
	아니오	빈도	71	74	114	12	47	318	
		%	22.3	23.3	35.8	3.8	14.8	100.0	
	모르겠다	빈도	8	17	27	22	33	107	
		%	7.5	15.9	25.2	20.6	30.8	100.0	
전체		빈도	162	135	192	60	126	675	
		%	24.0	20.0	28.4	8.9	18.7	100.0	

\*: p<.05, \*\*: p<.01, \*\*\*: p<.001

성별, 연령별, 학생여부별, 수급여부별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33.8%, 여자의 22.2%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22.4%,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29.7%,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28.0%가,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33.1%, 비학생의 18.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19.5%, 비수급자의 35.8%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2) 동거여부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부모 28.5%, 편부 19.1%, 편모 15.7%, 형제·자매 33.8%, 조부모 16.3%, 친척 4.8%, 친구 2.7%, 애인 0.6%, 없음 5.0%로,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28.5%, 편부 19.1%, 조부모 16.3%, 편모 15.7% 순이었다.

<표 III-11>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동거여부(복수응답)

구분		동거여부(복수응답)										전체	
		부모	편부	편모	형제· 자매	조부모	친척	친구	애인	동거자 없음	기타		
성별	남	빈도	124	63	53	119	73	17	8	0	19	34	375
		%	33.1	16.8	14.1	31.7	19.5	4.5	2.1	.0	5.1	9.1	136
	여	빈도	77	72	58	119	42	17	11	4	16	35	321
		%	24.0	22.4	18.1	37.1	13.1	5.3	3.4	1.2	5.0	10.9	140.5
연령	8세이상- 12세이하	빈도	17	14	7	23	22	4	0	0	0	2	61
		%	27.9	23.0	11.5	37.7	36.1	6.6	.0	.0	.0	3.3	146.1
	13세이상- 18세이하	빈도	157	112	95	198	90	24	12	3	19	58	544
		%	28.9	20.6	17.5	36.4	16.5	4.4	2.2	.6	3.5	10.7	141.3
	19세이상- 24세이하	빈도	24	7	6	15	3	6	7	1	16	9	82
		%	29.3	8.5	7.3	18.3	3.7	7.3	8.5	1.2	19.5	11.0	114.6
학생 여부	예	빈도	156	104	74	186	94	22	5	0	10	39	483
		%	32.3	21.5	15.3	38.5	19.5	4.6	1.0	.0	2.1	8.1	142.9
	아니오	빈도	39	28	32	43	20	12	14	4	25	28	194
		%	20.1	14.4	16.5	22.2	10.3	6.2	7.2	2.1	12.9	14.4	126.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여부	예	빈도	35	44	49	119	59	14	4	1	9	23	240
		%	14.6	18.3	20.4	49.6	24.6	5.8	1.7	.4	3.8	9.6	148.8
	아니오	빈도	134	65	50	93	31	13	8	1	16	22	322
		%	41.6	20.2	15.5	28.9	9.6	4.0	2.5	.3	5.0	6.8	134.4
	모르겠다	빈도	27	22	11	22	19	6	7	2	9	23	119
		%	22.7	18.5	9.2	18.5	16.0	5.0	5.9	1.7	7.6	19.3	124.4
전체	빈도	201	135	111	238	115	34	19	4	35	69	961	
	%	28.5	19.1	15.7	33.8	16.3	4.8	2.7	0.6	5.0	9.8	136.3	

성별, 연령별,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에 양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33.1%, 여자는 24.0%이며,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는 27.9%, 13세 이상 18세 이하는 28.9%, 19세이상 24세 이하는 29.3%가 양친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인 경우 32.3%, 아닌 경우 20.1%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14.6%, 비수급자의 41.6%가 양친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 2) 생활실태

### (1) 생활수준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편이다 33.4%, 어려운 편이다 40.3%, 보통이다 22.7%, 잘 사는 편이다 2.9%, 매우 잘 사는 편이다 0.7%로, 잘 사는 경우(3.6%)보다 어려운 경우(73.7%)가 현저히 많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95.0%, 비수급자의 56.4%가 매우 어렵거나 어려운 편이라고 하였다.

〈표 III-12〉 수급여부별 생활수준

구분			생활수준					전체	x <sup>2</sup>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수급 여부	예	빈도	145	83	10	0	2	240	173534***
		%	60.4	34.6	4.2	.0	.8	100.0	
	아니오	빈도	55	125	117	19	3	319	
		%	17.2	39.2	36.7	6.0	.9	100.0	
	모르겠다	빈도	27	66	28	1	0	122	
		%	22.1	54.1	23.0	.8	.0	100.0	
전체		빈도	233	281	158	20	5	697	
		%	33.4	40.3	22.7	2.9	0.7	100.0	

\*: p<.05, \*\*: p<.01, \*\*\*: p<.001

### (2) 생활비 조달방법

생활비 조달방법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10.1%, 부모 51.0%, 친척 2.6%, 형제·자매 1.0%, 조부모 5.3%, 친구 1.0%, 부정한 방법(절도 등) 2.7%, 없다 9.5%, 기타 16.7%였다.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외에 아르바이트(10.1%)가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생활비가 없는 경우도 9.5%에 달하였다.

〈표 III-13〉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생활비 조달방법

구분		생활비 조달방법										x <sup>2</sup>	
		아르바이트	부모	친척	형제자매	조부모	친구	부정한방법	없다	기타	전체		
연령	8세이상-12세이하	빈도	0	34	2	0	11	0	2	4	9	62	96.798***
		%	.0	54.8	3.2	.0	17.7	.0	3.2	6.5	14.5	100.0	
	13세이상-18세이하	빈도	40	287	15	5	26	5	16	55	91	540	
		%	7.4	53.1	2.8	.9	4.8	.9	3.0	10.2	16.9	100.0	
	19세이상-24세이하	빈도	29	27	1	2	0	2	1	7	14	83	
		%	34.9	32.5	1.2	2.4	.0	2.4	1.2	8.4	16.9	100.0	
학생여부	예	빈도	18	284	14	5	29	2	6	43	78	479	112.597***
		%	3.8	59.3	2.9	1.0	6.1	.4	1.3	9.0	16.3	100.0	
	아니오	빈도	52	59	4	2	7	5	11	23	33	196	
		%	26.5	30.1	2.0	1.0	3.6	2.6	5.6	11.7	16.8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	예	빈도	21	79	10	3	20	0	4	31	71	239	173.534***
		%	8.8	33.1	4.2	1.3	8.4	.0	1.7	13.0	29.7	100.0	
	아니오	빈도	36	213	5	3	8	2	7	23	22	319	
		%	11.3	66.8	1.6	.9	2.5	.6	2.2	7.2	6.9	100.0	
	모르겠다	빈도	13	49	3	1	9	5	7	11	22	120	
		%	10.8	40.8	2.5	.8	7.5	4.2	5.8	9.2	18.3	100.0	
전체	빈도	70	354	18	7	37	7	19	66	116	694		
	%	10.1	51.0	2.6	1.0	5.3	1.0	2.7	9.5	16.7	100.0		

\*: p<.05, \*\*: p<.01, \*\*\*: p<.001

연령별, 학생여부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 생활비 조달방법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는 부모 54.8%, 조부모 17.7% 기타 14.5%, 없다 6.5% 순이었으며, 13세 이상 18세 이하는 부모 53.1%, 기타 16.9%, 없다 10.2% 순이었다. 19세 이상 24세 이하는 아르바이트 34.9%, 부모 32.5%, 기타 16.9% 순이었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경우에 부모 59.3%, 기타 16.3%, 없다 9.0%, 조부모 6.1%, 아르바이트 3.8% 순이었으며, 비학생의 경우에는 부모 30.1%, 아르바이트 26.5%, 기타 16.8%, 없다 11.7% 순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경우에 부모 33.1%, 기타 29.7%, 없다 13.0%, 아르바이트 8.8%, 조부모 8.4% 순이었으며,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부모 66.8%, 아르바이트 11.3%, 없다 7.2% 순이었다.

### 3) 건강상태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매우 좋다 7.0%, 좋은 편이다 35.3%, 보통이다 39.7%, 나쁜 편이다 15.7%, 매우 심각하다 2.3%로,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인 경우가 42.3%를 차지하였다. 나쁜 편이거나 매우 심각한 경우도 18.0%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나타냈다.

성별,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5.1%, 여자의 21.2%가 나쁜 편이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24.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17.2%,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19.1%가 나쁜 편이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24.8%, 비수급자의 14.6%가 건강이 나쁜 편이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4>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건강상태

구분			건강상태					전체	x <sup>2</sup>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성별	남	빈도	23	136	161	54	3	377	11.632*
		%	6.1	36.1	42.7	14.3	.8	100.0	
	여	빈도	26	112	118	56	13	325	
		%	8.0	34.5	36.3	17.2	4.0	100.0	
연령	8세이상- 12세이하	빈도	2	20	24	13	2	61	16.194*
		%	3.3	32.8	39.3	21.3	3.3	100.0	
	13세이상- 18세이하	빈도	33	202	219	81	13	548	
		%	6.0	36.9	40.0	14.8	2.4	100.0	
	19세이상- 24세이하	빈도	13	21	34	15	1	84	
		%	15.5	25.0	40.5	17.9	1.2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수급 여부	예	빈도	22	65	94	50	10	241	25.856**
		%	9.1	27.0	39.0	20.7	4.1	100.0	
	아니오	빈도	22	132	122	41	6	323	
		%	6.8	40.9	37.8	12.7	1.9	100.0	
	모르겠다	빈도	4	48	54	16	0	122	
		%	3.3	39.3	44.3	13.1	.0	100.0	
전체		빈도	49	248	279	110	16	702	
		%	7.0	35.3	39.7	15.7	2.3	100.0	

\*: p<.05, \*\*: p<.01, \*\*\*: p<.001

### 3. 특별지원청소년 위기 실태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7%, 그렇지 않다가 25.5%로 많은 청소년들의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로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15>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낮은 자아존중감

구분			낮은 자아존중감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연령	8세이상-12세이하	빈도	50	10	2	62	10.611*
		%	80.6	16.1	3.2	100.0	
	13세이상-18세이하	빈도	385	136	25	546	
		%	70.5	24.9	4.6	100.0	
	19세이상-24세이하	빈도	45	30	5	80	
		%	56.3	37.5	6.3	100.0	
학생여부	예	빈도	349	109	25	483	9.466**
		%	72.3	22.6	5.2	100.0	
	아니오	빈도	122	66	7	195	
		%	62.6	33.8	3.6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	예	빈도	185	48	6	239	20.519***
		%	77.4	20.1	2.5	100.0	
	아니오	빈도	223	91	14	328	
		%	68.0	27.7	4.3	100.0	
	모르겠다	빈도	72	38	13	123	
		%	58.5	30.9	10.6	100.0	
전체		빈도	486	178	33	697	
		%	69.7	25.5	4.7	100.0	

\*: p<.05, \*\*: p<.01, \*\*\*: p<.001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80.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70.5%,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56.3%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72.3%, 비학생의 62.6%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77.4%, 비수급자의 68.0%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2) 우울·불안

우울, 불안에 대해 살펴보면, 59.1%가 자신이 우울 또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54.3%, 여자의 64.5%가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6> 성별 우울·불안

구분			우울불안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성 별	남	빈도	200	148	20	368	9.535**
		%	54.3	40.2	5.4	100.0	
	여	빈도	207	93	21	321	
		%	64.5	29.0	6.5	100.0	
전체		빈도	407	241	41	689	
		%	59.1	35.0	6.0	100.0	

\*: p<.05, \*\*: p<.01, \*\*\*: p<.001

## 3) 약물사용

전체적으로 3.3%가 약물사용(본드, 부탄 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약물사용(본드, 부탄 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1.7%, 여자의 5.1%가 약물사용경험이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1.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3.8%,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1.3%가 약물사용경험이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3.0%, 비수급자의 2.5%가 약물사용경험이 있었다.

<표 III-17>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약물사용(본드, 부탄 등)

구분			약물사용(본드, 부탄 등)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성별	남	빈도	6	302	50	358	6.621*
		%	1.7	84.4	14.0	100.0	
	여	빈도	16	261	37	314	
		%	5.1	83.1	11.8	100.0	
연령	8세이상-12세 이하	빈도	1	56	4	61	10.478*
		%	1.6	91.8	6.6	100.0	
	13세이상-18세이하	빈도	20	427	77	524	
		%	3.8	81.5	14.7	100.0	
	19세이상-24세 이하	빈도	1	73	4	78	
		%	1.3	93.6	5.1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예	빈도	7	196	28	231	11.185*
		%	3.0	84.8	12.1	100.0	
	아니오	빈도	8	275	33	316	
		%	2.5	87.0	10.4	100.0	
	모르겠다	빈도	6	88	25	119	
		%	5.0	73.9	21.0	100.0	
전체		빈도	22	563	87	672	
		%	3.3	83.8	12.9	100.0	

\*: p<.05, \*\*: p<.01, \*\*\*: p<.001

#### 4) 지능

지능에 대해 살펴보면, 20.4%가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67.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연령별, 학생여부별, 수급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18> 낮은 지능

구분		낮은 지능			전체
		예	아니오	미확인	
전체	빈도	140	464	82	686
	%	20.4	67.6	120	100.0

### 5) 술·담배 경험

술, 담배 경험은 46.0%가 술, 담배 경험이 있고, 46.7%가 술, 담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술, 담배 여부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8.2%,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48.0%,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64.1%가 술, 담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35.2%, 비학생의 73.7%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38.0%, 비수급자의 47.0%가 술 또는 담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9>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술, 담배 여부

구분			술, 담배 여부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연령	8세 이상-12세 이하	빈도	5	52	4	61	52.761***
		%	8.2	85.2	6.6	100.0	
	13세 이상-18세 이하	빈도	256	232	45	533	
		%	48.0	43.5	8.4	100.0	
	19세 이상-24세 이하	빈도	50	27	1	78	
		%	64.1	34.6	1.3	100.0	
학생여부	예	빈도	166	261	45	472	82.489***
		%	35.2	55.3	9.5	100.0	
	아니오	빈도	140	47	3	190	
		%	73.7	24.7	1.6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	예	빈도	89	118	27	234	18.449**
		%	38.0	50.4	11.5	100.0	
	아니오	빈도	151	155	15	321	
		%	47.0	48.3	4.7	100.0	
	모르겠다	빈도	68	44	8	120	
		%	56.7	36.7	6.7	100.0	
전체		빈도	313	318	50	681	
		%	46.0	46.7	7.3	100.0	

\*: p<.05, \*\*: p<.01, \*\*\*: p<.001

### 6) 성관계 경험

성관계 경험을 살펴보면, 10.0%가 잦은 성관계 경험이 있었으며, 70.5%는 잦은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 별 잦은 성관계에 관해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3.9%, 여자의 17.0%가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6.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10.9%,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6.4%가 잦은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여부 별로는 학생의 5.7%, 비학생의 19.4%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자의 12.4%, 비수급자의 8.4%가 잦은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0>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잦은 성관계

구분			잦은 성관계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성별	남	빈도	14	286	63	363	38.727***
		%	3.9	78.8	17.4	100.0	
	여	빈도	54	194	70	318	
		%	17.0	61.0	22.0	100.0	
연령	8세 이상-12세 이하	빈도	4	56	1	61	17.724**
		%	6.6	91.8	1.6	100.0	
	13세이상-18세 이하	빈도	58	361	114	533	
		%	10.9	67.7	21.4	100.0	
	19세이상-24세 이하	빈도	5	57	16	78	
		%	6.4	73.1	20.5	100.0	
학생 여부	예	빈도	27	357	87	471	32.075***
		%	5.7	75.8	18.5	100.0	
	아니오	빈도	37	113	41	191	
		%	19.4	59.2	21.5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수급 여부	예	빈도	29	156	49	234	14.855**
		%	12.4	66.7	20.9	100.0	
	아니오	빈도	27	247	47	321	
		%	8.4	76.9	14.6	100.0	
	모르겠다	빈도	12	74	34	120	
		%	10.0	61.7	28.3	100.0	
전체		빈도	68	480	133	681	
		%	10.0	70.5	19.5	100.0	

\*: p<.05, \*\*: p<.01, \*\*\*: p<.001

### 7) 범죄경험

범죄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30.5%가 범죄경험이 있었고, 57.2%가 범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1>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범죄경험

구분		범죄 경험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성별	남	빈도	130	201	35	12.190**
		%	35.5	54.9	9.6	
	여	빈도	78	190	49	
		%	24.6	59.9	15.5	
연령	8세 이상-12세 이하	빈도	9	46	6	12.799*
		%	14.8	75.4	9.8	
	13세 이상-18세 이하	빈도	179	289	66	
		%	33.5	54.1	12.4	
	19세 이상-24세 이하	빈도	19	49	11	
		%	24.1	62.0	13.9	
학생여부	예	빈도	125	289	60	14.774**
		%	26.4	61.0	12.7	
	아니오	빈도	79	91	20	
		%	41.6	47.9	10.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예	빈도	68	138	27	14.991**
		%	29.2	59.2	11.6	
	아니오	빈도	97	197	30	
		%	29.9	60.8	9.3	
	모르겠다	빈도	39	55	26	
		%	32.5	45.8	21.7	
전체		빈도	208	391	84	683
		%	30.5	57.2	12.3	

\*: p<.05, \*\*: p<.01, \*\*\*: p<.001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범죄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의 35.5%, 여자의 24.6%가, 그리고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14.8%,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33.5%,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24.1%가 범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26.4%, 비학생의 41.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29.2%, 비수급자의 29.9%가 범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8) 부부폭력 경험

가족적 위기여부 중 부부폭력 경험을 살펴보면, 24.3%가 부부폭력 경험이 있었고, 48.4%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27.2%, 비수급자의 25.9%가 부부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2〉 수급여부별 부부폭력

구분			부부폭력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예	빈도	63	112	57	232	46.441***
		%	27.2	48.3	24.6	100.0	
	아니오	빈도	82	170	65	317	
		%	25.9	53.6	20.5	100.0	
	모르겠다	빈도	18	38	62	118	
		%	15.3	32.2	52.5	100.0	
전체		빈도	163	325	184	672	
		%	24.3	48.4	27.4	100.0	

\*: p<.05, \*\*: p<.01, \*\*\*: p<.001

### 9)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32.6%가 아동학대경험이 있었고, 51.0%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 아동학대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수급자의 35.6%, 비수급자의 30.1%가 아동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3〉 수급여부별 아동학대

구분			아동학대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	예	빈도	83	115	35	233	77.562***
		%	35.6	49.4	15.0	100.0	
	아니오	빈도	97	197	28	322	
		%	30.1	61.2	8.7	100.0	
	모르겠다	빈도	41	31	49	121	
		%	33.9	25.6	40.5	100.0	
전체		빈도	222	347	112	681	
		%	32.6	51.0	16.4	100.0	

\*: p<.05, \*\*: p<.01, \*\*\*: p<.001

### 10) 부모 갈등 경험

부모와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64.9%였으며, 갈등이 없는 경우가 27.6%였다.

<표 III-24>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부모와의 갈등

구분			부모와의 갈등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성별	남	빈도	221	107	36	364	8.916*
		%	60.7	29.4	9.9	100.0	
	여	빈도	219	80	15	314	
		%	69.7	25.5	4.8	100.0	
연령	8세 이상-12세 이하	빈도	26	24	9	59	15.911**
		%	44.1	40.7	15.3	100.0	
	13세 이상-18세 이하	빈도	361	140	32	533	
		%	67.7	26.3	6.0	100.0	
	19세 이상-24세 이하	빈도	49	21	8	78	
		%	62.8	26.9	10.3	100.0	
학생여부	예	빈도	284	143	41	468	12.278**
		%	60.7	30.6	8.8	100.0	
	아니오	빈도	144	38	10	192	
		%	75.0	19.8	5.2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	예	빈도	139	77	17	233	17.942**
		%	59.7	33.0	7.3	100.0	
	아니오	빈도	217	85	16	318	
		%	68.2	26.7	5.0	100.0	
	모르겠다	빈도	80	24	18	122	
		%	65.6	19.7	14.8	100.0	
전체		빈도	440	187	51	678	
		%	64.9	27.6	7.5	100.0	

\*: p<.05, \*\*: p<.01, \*\*\*: p<.001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부모와의 갈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60.7%, 여자의 69.7%가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44.1%,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67.7%,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62.8%가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60.7%, 비학생의 75.0%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59.7%, 비수급자의 68.2%가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 11) 부모 형집행 경험

부모 형집행 경험을 살펴보면, 5.5%가 부모가 형집행된 경험이 있었고, 71.0%는 부모가 형집행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8.7%, 비수급자의 4.4%가 부모가 형집행(교도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5〉 수급여부별 부모의 형집행(교도소)

구분		부모의 형집행(교도소)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 여부	예	빈도	20	154	56	230	43.467***
		%	8.7	67.0	24.3	100.0	
	아니오	빈도	14	255	50	319	
		%	4.4	79.9	15.7	100.0	
	모르겠다	빈도	3	64	51	118	
		%	2.5	54.2	43.2	100.0	
전체		빈도	37	478	158	673	
		%	5.5	71.0	23.5	100.0	

\*: p<.05, \*\*: p<.01, \*\*\*: p<.001

### 12) 가족빈곤 경험

가족빈곤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64.2%가 빈곤하고, 26.7%는 빈곤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가족빈곤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 남자의 59.1%, 여자의 70.2%가, 그리고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77.0%,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64.5%,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51.3%가 가족빈곤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91.6%, 비수급자의 49.2%가 가족빈곤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6>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가족빈곤

구분			가족빈곤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성별	남	빈도	218	113	38	369	9.245*
		%	59.1	30.6	10.3	100.0	
	여	빈도	224	71	24	319	
		%	70.2	22.3	7.5	100.0	
연령	8세이상-12세 이하	빈도	47	12	2	61	12.234*
		%	77.0	19.7	3.3	100.0	
	13세이상-18세 이하	빈도	349	140	52	541	
		%	64.5	25.9	9.6	100.0	
	19세이상-24세 이하	빈도	40	31	7	78	
		%	51.3	39.7	9.0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예	빈도	218	14	6	238	224.860** *
		%	91.6	5.9	2.5	100.0	
	아니오	빈도	159	148	16	323	
		%	49.2	45.8	5.0	100.0	
	모르겠다	빈도	62	19	40	121	
		%	51.2	15.7	33.1	100.0	
전체		빈도	442	184	62	688	
		%	64.2	26.7	9.0	100.0	

\*: p<.05, \*\*: p<.01, \*\*\*: p<.001

### 13) 부모 알코올 중독 경험

부모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살펴보면, 18.1%가 부모가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였고, 58.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별로는 수급자의 24.9%, 비수급자의 13.8%가 부모의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었다.

〈표 III-27〉 수급여부별 부모의 알코올중독

구분		부모의 알코올중독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수급 여부	예	빈도	58	121	54	233	43.068***
		%	24.9	51.9	23.2	100.0	
	아니오	빈도	44	222	53	319	
		%	13.8	69.6	16.6	100.0	
	모르겠다	빈도	20	52	48	120	
		%	16.7	43.3	40.0	100.0	
전체		빈도	123	399	156	678	
		%	18.1	58.8	23.0	100.0	

\*: p<.05, \*\*: p<.01, \*\*\*: p<.001

#### 14) 부모 정신질환 경험

부모의 정신질환(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에 대해 살펴보면, 16.0%가 부모가 정신질환을 경험하였고, 56.4%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24.6%, 비수급자의 12.5%가 부모의 정신질환(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을 경험하였다.

〈표 III-28〉 수급여부별 부모의 정신질환(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구분		부모의 정신질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수급 여부	예	빈도	57	112	63	232	42.254***
		%	24.6	48.3	27.2	100.0	
	아니오	빈도	40	211	70	321	
		%	12.5	65.7	21.8	100.0	
	모르겠다	빈도	10	56	52	118	
		%	8.5	47.5	44.1	100.0	
전체		빈도	108	382	187	677	
		%	16.0	56.4	27.6	100.0	

\*: p<.05, \*\*: p<.01, \*\*\*: p<.001

15) 술·담배 경험 있는 친구 유무

또래집단 및 학교 위기 여부 중 술, 담배 피는 친구에 대해 살펴보면, 48.7%가 술, 담배를 하는 친구가 있고, 41.4%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술, 담배 피는 친구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9.8%,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52.3%,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58.0%가 술, 담배 피는 친구가 많았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40.2%, 비학생의 70.3%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46.2%, 비수급자의 49.7%가 술, 담배 피는 친구가 많았다.

<표 III-29>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술, 담배 피는 친구 많음

구분			술, 담배 피는 친구 많음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연령	8세 이상-12세 이하	빈도	6	52	3	61	56.474***
		%	9.8	85.2	4.9	100.0	
	13세 이상-18세 이하	빈도	279	196	58	533	
		%	52.3	36.8	10.9	100.0	
	19세 이상-24세 이하	빈도	47	28	6	81	
		%	58.0	34.6	7.4	100.0	
학생 여부	예	빈도	190	228	55	473	49.660***
		%	40.2	48.2	11.6	100.0	
	아니오	빈도	135	46	11	192	
		%	70.3	24.0	5.7	100.0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수급 여부	예	빈도	108	101	25	234	21.550***
		%	46.2	43.2	10.7	100.0	
	아니오	빈도	161	144	19	324	
		%	49.7	44.4	5.9	100.0	
	모르 겠다	빈도	58	38	24	120	
		%	48.3	31.7	20.0	100.0	
전체		빈도	333	283	68	684	
		%	48.7	41.4	9.9	100.0	

\*: p<.05, \*\*: p<.01, \*\*\*: p<.001

16) 약물 하는 친구 유무

약물하는 친구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4.9%가 약물하는 친구가 있고, 74.8%가 약물하는 친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 수급여부별로 약물하는 친구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1.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5.4%,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3.8%가 약물 하는 친구가 많다고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2.2%, 비수급자의 5.1%가 약물 하는 친구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0> 성별,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약물 하는 친구 많음

구분			약물 하는 친구 많음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연령	8세 이상-12세 이하	빈도	1	59	1	61	19.761**
		%	1.6	96.7	1.6	100.0	
	13세 이상-18세 이하	빈도	28	374	121	523	
		%	5.4	71.5	23.1	100.0	
	19세 이상-24세 이하	빈도	3	63	13	79	
		%	3.8	79.7	16.5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	예	빈도	5	176	49	230	24.913***
		%	2.2	76.5	21.3	100.0	
	아니오	빈도	16	254	46	316	
		%	5.1	80.4	14.6	100.0	
	모르겠다	빈도	9	71	39	119	
		%	7.6	59.7	32.8	100.0	
전체		빈도	33	502	136	671	
		%	4.9	74.8	20.3	100.0	

※: p<.05, \*\*: p<.01, \*\*\*: p<.001

17) 폭력써클 가입 친구 유무

폭력써클에 가입된 친구 많음에 대해 살펴보면, 13.9%가 폭력써클에 가입한 친구가 많고, 64.9%가 폭력써클에 가입한 친구가 많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1>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폭력써클에 가입된 친구 많음

구분			폭력써클에 가입된 친구 많음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연령	8세 이상 12세 이하	빈도	1	57	3	61	32.048***
		%	1.6	93.4	4.9	100.0	
	13세 이상 18세 이하	빈도	84	315	126	525	
		%	16.0	60.0	24.0	100.0	
	19세 이상 24세 이하	빈도	7	61	12	80	
		%	8.8	76.3	15.0	100.0	
학생 여부	예	빈도	55	318	93	466	8.776**
		%	11.8	68.2	20.0	100.0	
	아니오	빈도	37	109	44	190	
		%	19.5	57.4	23.2	100.0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 여부	예	빈도	30	156	46	232	21.125***
		%	12.9	67.2	19.8	100.0	
	아니오	빈도	49	217	52	318	
		%	15.4	68.2	16.4	100.0	
	모르겠다	빈도	13	63	43	119	
		%	10.9	52.9	36.1	100.0	
전체		빈도	94	438	143	675	
		%	13.9	64.9	21.2	100.0	

\*: p<.05, \*\*: p<.01, \*\*\*: p<.001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폭력써클 가입 친구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1.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16.0%,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8.8%가 폭력써클에 가입된 친구가 많다고 하였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11.8%, 비학생의 19.5%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12.9%, 비수급자의 15.4%가 폭력써클에 가입된 친구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18)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24.8%가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고, 61.2%가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집단따돌림 피해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20.2%, 여자의 30.0%가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27.9%,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26.0%,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15.0%가 집단따돌림 피해가 있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26.1%, 비수급자의 25.9%가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하였다.

<표 III-32> 성별, 연령, 수급여부별 집단따돌림 피해

구분			집단따돌림 피해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성별	남	빈도	73	241	47	361	10.843**
		%	20.2	66.8	13.0	100.0	
	여	빈도	96	176	48	320	
		%	30.0	55.0	15.0	100.0	
연령	8세 이상-12세 이하	빈도	17	37	7	61	12.506*
		%	27.9	60.7	11.5	100.0	
	13세 이상-18세 이하	빈도	138	312	81	531	
		%	26.0	58.8	15.3	100.0	
	19세 이상-24세 이하	빈도	12	63	5	80	
		%	15.0	78.8	6.3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	예	빈도	61	142	31	234	31.366***
		%	26.1	60.7	13.2	100.0	
	아니오	빈도	83	210	28	321	
		%	25.9	65.4	8.7	100.0	
	모르겠다	빈도	23	61	35	119	
		%	19.3	51.3	29.4	100.0	
	전체	빈도	169	417	95	681	
		%	24.8	61.2	14.0	100.0	

\*: p<.05, \*\*: p<.01, \*\*\*: p<.001

### 19) 교사 갈등 경험

교사와의 갈등경험을 살펴보면 36.4%가 갈등경험이 있고, 54.3%가 갈등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교사와의 갈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19.7%,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41.8%,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15.2%가 교사와의 갈등을 경험하였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36.6%, 비학생의 35.6%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34.8%, 비수급자의 39.8%가 교사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3>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교사와의 갈등

구분			교사와의 갈등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연령	8세 이상-12세 이하	빈도	12	46	3	61	33.217***
		%	19.7	75.4	4.9	100.0	
	13세 이상-18세 이하	빈도	221	259	49	529	
		%	41.8	49.0	9.3	100.0	
	19세 이상-24세 이하	빈도	12	57	10	79	
		%	15.2	72.2	12.7	100.0	
학생여부	예	빈도	170	261	34	465	7.282*
		%	36.6	56.1	7.3	100.0	
	아니오	빈도	69	98	27	194	
		%	35.6	50.5	13.9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 여부	예	빈도	80	135	15	230	58.141***
		%	34.8	58.7	6.5	100.0	
	아니오	빈도	128	179	15	322	
		%	39.8	55.6	4.7	100.0	
	모르겠다	빈도	35	52	33	120	
		%	29.2	43.3	27.5	100.0	
전체		빈도	247	368	63	678	
		%	36.4	54.3	9.3	100.0	

\*: p<.05, \*\*: p<.01, \*\*\*: p<.001

## 20) 낮은 학교성적 경험

낮은 학교성적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68.5%가 낮은 학교성적을 경험했고, 25.4%가 낮은 학교성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낮은 학교성적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67.7%,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71.8%,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46.9%가 낮은 학교성적을 보고하였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72.9%, 비학생의 56.3%,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75.0%, 비수급자의 64.7%가 학교성적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4>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낮은 학교성적

구분			낮은 학교성적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연령	8세 이상-12세 이하	빈도	42	19	1	62	26.965***
		%	67.7	30.6	1.6	100.0	
	13세 이상-18세 이하	빈도	385	116	35	536	
		%	71.8	21.6	6.5	100.0	
	19세 이상-24세 이하	빈도	38	38	5	81	
		%	46.9	46.9	6.2	100.0	
학생여부	예	빈도	349	109	21	479	18.921***
		%	72.9	22.8	4.4	100.0	
	아니오	빈도	107	64	19	190	
		%	56.3	33.7	10.0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	예	빈도	177	50	9	236	31.836***
		%	75.0	21.2	3.8	100.0	
	아니오	빈도	211	101	14	326	
		%	64.7	31.0	4.3	100.0	
	모르겠다	빈도	76	24	19	119	
		%	63.9	20.2	16.0	100.0	
전체		빈도	471	175	42	688	
		%	68.5	25.4	6.1	100.0	

\*: p<.05, \*\*: p<.01, \*\*\*: p<.001

## 21) 학교무단결석 경험

학교무단결석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52.1%가 학교무단결석경험이 있고, 43.5%가 학교무단결석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학교무단결석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의 18.0%,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57.4%,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43.8%가 학교를 무단결석한 경험이 있었다. 학생여부별로는 학생의 47.1%, 비학생의 63.9%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별로는 수급자의 50.6%, 비수급자의 52.0%가 학교를 무단결석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5> 연령, 학생여부, 수급여부별 학교무단결석

구분		학교 무단결석			전체	x <sup>2</sup>	
		예	아니오	미확인			
연령	8세 이상-12세 이하	빈도	11	48	2	61	40.480***
		%	18.0	78.7	3.3	100.0	
	13세이상-18세 이하	빈도	306	206	21	533	
		%	57.4	38.6	3.9	100.0	
	19세이상-24세 이하	빈도	35	39	6	80	
		%	43.8	48.8	7.5	100.0	
학생여부	예	빈도	223	236	14	473	31.496***
		%	47.1	49.9	3.0	100.0	
	아니오	빈도	122	53	16	191	
		%	63.9	27.7	8.4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여부	예	빈도	120	109	8	237	21.477***
		%	50.6	46.0	3.4	100.0	
	아니오	빈도	168	147	8	323	
		%	52.0	45.5	2.5	100.0	
	모르겠다	빈도	63	40	14	117	
		%	53.8	34.2	12.0	100.0	
전체		빈도	356	297	30	683	
		%	52.1	43.5	4.4	100.0	

\*: p<.05, \*\*: p<.01, \*\*\*: p<.001

#### 4.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실태 및 필요성

대상 청소년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복수응답)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지원의 경우 의복, 음식물 등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용 지원 31.9%, 숙식제공 10.8%였다. 둘째, 건강지원(의료지원)의 경우 질병에 대한 의료급여 30.8%,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건강진단비용 등 예방비용 포함) 14.8%,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11.2%였다. 셋째, 학업지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20.4%,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9.1%, 학원비 등 7.2%였다. 넷째, 자립지원(직업훈련)의 경우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교육비용 포함) 18.5%, 직업체험비용 6.8%,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 지원비, 훈련수당, 교통비, 식사비 포함) 7.0%,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비용 7.6%였다. 다섯째, 상담지원의 경우 개인 및 가족상담비 31.3%, 심리검사비 30.0%,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20.5%였다. 여섯째, 법률지원의 경우 소송비용 6.3%, 법률상담비용 6.0%였다. 일곱째, 청소년활동지원의 경우 수련활동비(캠프 및 수련활동 참가비용) 10.4%, 문화활동비(관람기관 입장료 등) 9.4%, 교류활동비(국내 및 국제교류시 필요비용) 6.9%였다. 여덟째, 그 밖의 지원비용의 경우 기타 비용 2.4%였다. 지원유형별로는 상담지원이 8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지원(의료지원) 56.8%, 생활지원 42.7%, 자립지원(직업훈련) 39.9%, 학업지원 36.7%, 청소년활동지원 26.7%, 법률지원 12.3%, 그 밖의 지원 2.4% 순이었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의복, 음식물 등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용(31.9%)을 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 및 가족상담비(31.3%)를 받고 있는 경우, 질병에 대한 의료급여 30.8%, 심리검사비 30.0%,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20.5%, 입학금 및 수업료 20.4%,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교육비용 포함) 18.5%,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건강진단비용 등 예방비용 포함) 14.8%,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11.2%, 숙식제공 10.8%. 수련활동비(캠프 등 수련활동 참가비용) 10.4%, 문화활동비(관람기관 입장료 등) 9.4%,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9.1%,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비용 7.6%, 학원비 등 7.2%,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 지원비, 훈련수당, 교통비, 식사비 포

함) 7.0%, 교류활동비 (국내 및 국제교류시 필요비용) 6.9%, 직업체험비용 6.8%, 소송비용 6.3%, 법률상담비용 6.0%, 기타 비용 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대상 청소년의 지원서비스와 지원기관, 필요한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 종류	현재 받고 있는 지원	필요한 서비스
1.생활지원	① 의복, 음식물 등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용	219(31.9)	181(26.9)
	② 숙식제공	76(10.8)	143(21.2)
2.건강지원 (의료지원)	① 질병에 대한 의료급여	217(30.8)	171(25.5)
	②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건강진단비용 등 예방비용 포함)	104(14.8)	226(33.7)
	③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79(11.2)	144(21.5)
3.학업지원	① 입학금 및 수업료	144(20.4)	182(27.0)
	②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64(9.1)	241(35.8)
	③ 학원비 등	51(7.2)	235(34.8)
4.자립지원 (직업훈련)	①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 (적성·흥미검사 및 상담·교육비용 포함)	126(18.5)	284(42.0)
	② 직업체험비용	46(6.8)	183(27.2)
	③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 지원비, 훈련수당, 교통비, 식사비 포함)	48(7.0)	200(29.7)
	④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비용	52(7.6)	180(26.7)
5.상담지원	① 개인 및 가족상담비	221(31.3)	266(39.5)
	② 심리검사비	209(30.0)	229(33.9)
	③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140(20.5)	254(37.4)
6.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43(6.3)	39(5.8)
	② 법률상담비용	41(6.0)	45(6.7)
7.청소년 활동 지원	① 수련활동비(캠ป์ 등 수련활동 참가비용)	71(10.4)	283(41.7)
	② 문화활동비(관람기관 입장료 등)	64(9.4)	200(29.8)
	③ 교류활동비 (국내 및 국제교류시 필요비용)	47(6.9)	175(26.1)
8.그 밖의 지원비용	1~7과 중복되지 않는 기타 비용	16(2.4)	34(5.1)

대상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지원의 경우 의복, 음식물 등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용은 26.9%, 숙식제공은 21.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건강지원(의료지원)의 경

우 질병에 대한 의료급여는 25.5%,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건강진단비용 등 예방비용 포함)는 33.7%,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21.5%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학업지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는 27.0%,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는 35.8%, 학원비 등은 43.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자립지원(직업훈련)의 경우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교육비용 포함)은 42.0%, 직업체험비용은 27.2%,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 지원비, 훈련수당, 교통비, 식사비 포함)은 29.7%,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비용은 26.7%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섯째, 상담지원의 경우 개인 및 가족상담비는 39.5%, 심리검사비는 33.9%,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집단상담, 특수치료 등)는 37.4%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섯째, 법률지원의 경우 소송비용은 5.8%, 법률상담비용은 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청소년활동지원의 경우 수련활동비(캠프 등 수련활동 참가비용)는 41.7%, 문화활동비(관람기관 입장료 등)는 42.8%, 교류활동비(국내 및 국제교류시 필요비용)는 26.1%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덟째 그 밖의 지원비용의 경우 기타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였다. 지원유형별로는 자립지원(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중복문항포함) 12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담지원 110.8%, 청소년 활동 지원 110.6%, 학업지원 106.6%, 건강지원(의료지원) 80.7%, 생활지원 48.1%, 법률지원 12.5%, 그 밖의 지원비용 5.1% 순이었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활동비(관람기관 입장료 등) 42.8%,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교육비용 포함) 42.0%, 수련활동비(캠프 등 수련활동 참가비용) 41.7%, 개인 및 가족상담비 39.5%,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37.4%,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35.8%, 심리검사비 33.9%,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건강진단비용 등 예방비용 포함) 33.7%,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 지원비, 훈련수당, 교통비, 식사비 포함) 29.7%, 직업체험비용 27.2%, 입학금 및 수업료 27.0%, 의복, 음식물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용 26.9%,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비용 26.7%, 교류활동비(국내 및 국제교류시 필요비용) 26.1%, 질병에 대한 의료급여 25.5%,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1.5%, 숙식제공 21.2%, 법률상담비용 6.7%, 소송비용 5.8%, 기타 비용 5.1% 순이었다.



## IV.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지원·관리

1.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2.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내용 및 전달체계
3. 특별지원청소년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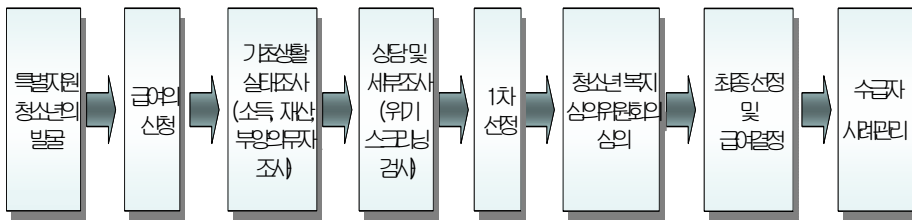


## IV.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지원·관리

### 1.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 1) 대상자 선정과정

특별지원청소년을 최초 발굴하는 시점부터 선정 및 지원하는 업무의 흐름도를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IV-1]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업무의 흐름도

본 지원제도와 관련한 예산운용과 행정적 책임의 소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접수 및 실태조사, 금전·물품 등의 지원 업무는 시·군·구의 청소년 담당 공무원이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 2항에 근거하여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및 상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나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내용을 전제로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 (1) 대상자 발굴 및 신청 단계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9조)

〈표 IV-1〉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 발굴 경로

신청경로	담당자	해당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	당사자 청소년과 주변 가족 구성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 청소년
학교	교원, 학교사회복지사	학교 재학생으로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안학교 및 비정규 교육기관	교원	정규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을 퇴소했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복지사	가출, 미혼모 등 복지시설의 지원에 한계가 있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기타 언론 및 다양한 대국민 홍보	청소년과 주변 가족 및 관계자	보호가 필요한 기타 유형의 청소년

(2) 기초 생활실태조사 단계

신청 및 실태조사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청소년 담당 공무원은 해당기준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특별지원청소년의 신청을 접수한 후, 중복지원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및 선정기준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는지 등 기초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적합성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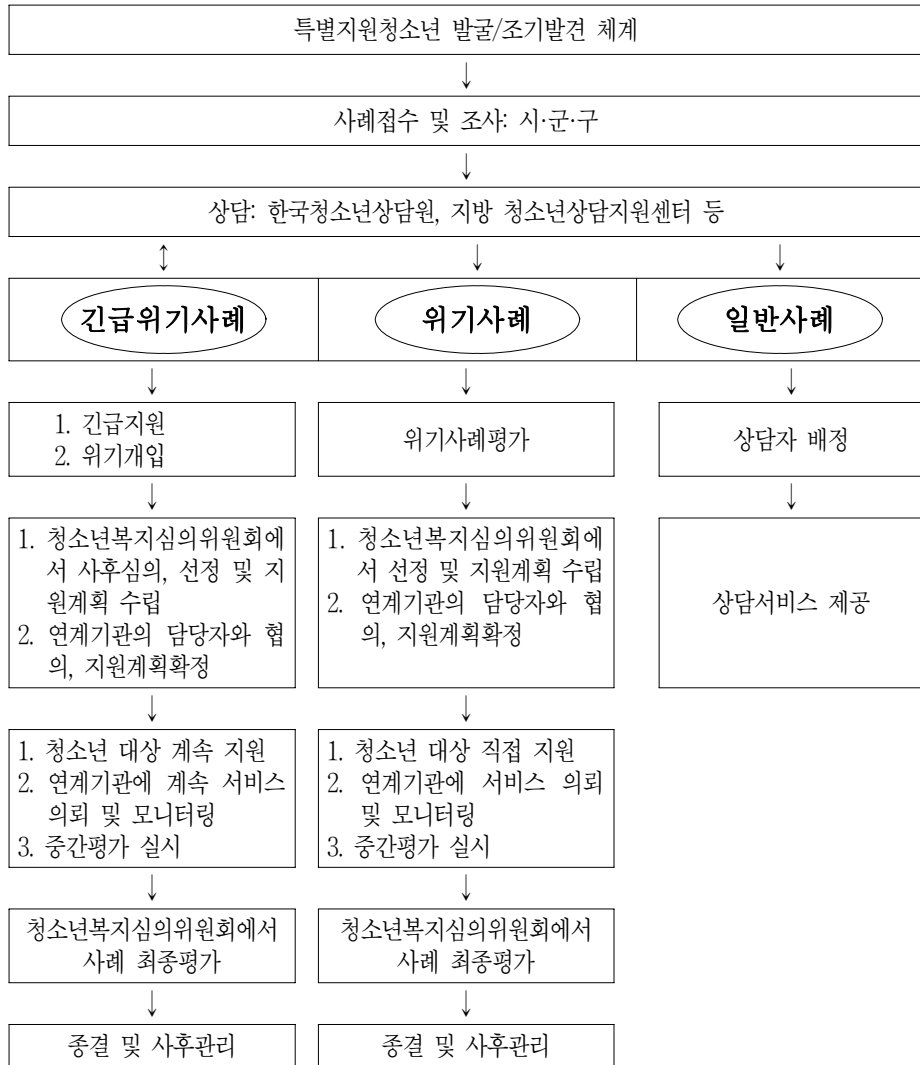
조사 및 상담업무 : ①보호자의 유무, 보호능력 및 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②청소년의 생계, 학업 등 생활실태 및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

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동법 시행령 제10조)

### (3) 상담, 세부조사 및 1차 선정 단계

상담 및 세부조사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의 지원 적합성을 기초 조사한 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상담 및 세부조사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하게 된다. 이때 조사상담 업무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하도록 한다. 이후 조사상담업무의 담당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이유 및 문제발생경위, 위기정도, 지원요청내용, 향후 계획 및 목표 등을 상담한 후 위기상황별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검토·중복수급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1차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조사기간은 15일 내로 하며, 서류 포함 검증은 30일 내로 하도록 한다.

또한 대상 선정 시 긴급위기사례의 경우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수 있는데 현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과해야 지원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개정 법률에서는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의 형태라면 “지체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우선 지원결정 이후 사후심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림 IV-2] 대상자 유형별 지원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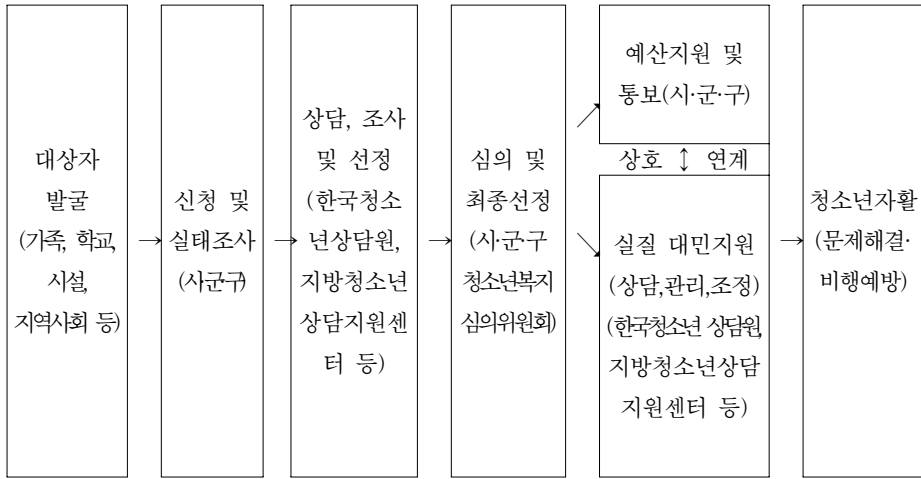
#### (4) 심의 및 최종 선정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급성 때문에 지체없이 지원 결정한 경우 사후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연장 결정,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또는 지

원비용의 환수 결정, 친권자에게 비용의 징수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시·군·구는 행정기관 내에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1차 선정과정에서 결정된 대상자들의 제반자료를 심의하여 최종 선정 대상과 지원내용을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월 1회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위급한 경우 2회 이상이 열릴 수도 있다. 이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될 것이며 부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국장 등이 될 것이다. 나머지 위원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다. 심의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청소년담당 과장이나 팀장 등이 될 것이며, 대상자와 위탁기관, 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5) 예산지원, 통보 및 사례관리

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 및 단체장에게 전달되며, 담당 공무원은 청소년 및 상담센터, 지원관련 기관에 지원내용을 통보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특별지원청소년 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회의 통보 관련 결재를 득한 뒤 해당 청소년에게 명시된 예산지원업무를 실시한다. 직접적 금전 지원과 관계없는 지원 실무와 관련하여 해당 상담원 및 상담센터의 담당자와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은 1년 이내로 실시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간에 지원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해당 관청 공무원은 지원관련 결산 처리 및 지원결과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다.



[그림 IV-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절차 요약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후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는 해당 청소년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실질적이고 단일화된(one-stop) 지원서비스 제공 창구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담당자는 특별지원청소년 지원현황 대장을 작성·관리하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게 하기 위한 조정 역할 및 심리·사회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서비스 기관으로의 연계 의뢰 및 대상자 사후 관리 등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위탁 상담센터의 담당자는 청소년 개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도록 하며, 전체적인 조정자,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대상자 선정기준

### (1) 가정내 청소년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의 신청을 접수한 후, ①보호자의 유무, 보호능력 및 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②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지

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1차 선정된 대상자를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초기 상담과 위기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위기수준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별지원청소년을 최종 선정한다.

#### 가. 보장의 단위

보장기관은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12조의 2)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청소년
- 가구단위 보장 : 특정 청소년이 속하는 가구의 모든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가구 단위로 수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의 욕구나 문제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 개인단위로 수급을 결정하는 것을 분명히 함.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 개인에게만 지원해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동시 지원 원칙을 반영하여 세대 단위로 지원이 가능함을 함께 명시함

○ 개인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족 출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 이를 막기 위해 친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규정을 신설함(법 제12조의 3).

#### 나. 급여의 신청

##### ① 급여신청 주체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② 급여신청의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가출 등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③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신청서 항목>

- 연령, 성별,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사항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
- 주민등록번호 기억유무
- 부모 유무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이유
- 특별보호청소년의 현재 주거형태, 가족상황
- 특별보호청소년의 과거 이용시설 유형
- 특별지원을 나열하고 실제 신청하겠는지 여부
- 특별보호청소년 지원을 조건으로 시설입소할 수 있는지 유무
- 특별보호청소년 지원을 조건으로 모든 가족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유무
- 아르바이트 소득 등

- 서류제출은 가능한 줄이고 전산조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서류제출 요구

(2) 시설내 수용 청소년

- 특별지원청소년의 현금 급여는 특별지원청소년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특별지원청소년이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급여

지급 업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보장시설 특별지원청소년 선정기준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특별지원 청소년이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지원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등임

○ 보장시설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조사 및 관리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 특별지원청소년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대상자의 보호차원에서 쉼터 소재를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급여지급. 다만, 주민등록지의 보장기관은 쉼터 관할 보장기관 등과 협의하여 수급권자의 쉼터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관리

○ 보장시설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특별지원청소년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특별지원청소년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특별지원청소년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이전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3)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

- 주거가 일정치 않은 청소년의 경우 시설입소(쉼터 등)를 통해 보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하는 것처럼 특별보호청소년번호 부여하는 방식 시도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지원에서 제외된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보장기관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지원청소년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 후원단체 등을 멘토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실제거주 사실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 특별지원 수급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특별지원청소년이 실제 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 지속거주 요건  
특별지원청소년이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 관리 방안 : 특별보호청소년번호 부여
  -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 거주지 외 주민등록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 시까지 특별보호청소년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 특별지원청소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 3) 대상자의 사정

#### (1) 가족 조사(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 읍·면·동 청소년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보장시설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시·군·구의 보장시설 담당 공무원이 수행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특히 소득·재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함
- 청소년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의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준용할 수 있음
  - 다만, 청소년의 소득·재산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 계층이나 그 이상까지 포함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 조사의 경우, 부양능력보다는 실제 부양여부나 현황이 더 중요함.

## 가.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

### ① 전산조회 활용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국세청(종합소득)
- 행정자치부(지적정보)
-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소득월액 · 연금급여, 보험료납입정보)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표준보수월액)
- 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 · 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 국방부(군인연금급여)
- 국가보훈처(보훈연금급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급여 · 보수월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급여 · 보수월액)

○ 호적정보 : G4C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 ○ 금융재산 조회

- 각 시·군·구에서 특별지원청소년 등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 금융기관(금고, 지점 등)과 협의하여 조회할 수 있음

※ 반드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한 자에 한하여 조회 실시

### ② 실태조사 실시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및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

- 부정기적인 사업·자영업 사업자, 근로능력,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 여부 등

나.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 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보관함.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전산망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함

<표 IV-2> 조사목적별 제출서류의 목록

제출 목적	제 출 서 류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 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 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가구원 및 부양 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 ②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제출 시 등)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2) 개인 사정 (위기 스크리닝 검사)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상담 및 세부 조사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하게 됨

- 이 때 조사상담 업무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담당함. 이후 조사상담업무의 담당자는 청소년을 상담한 후 위기 스크리닝 척도로 위기정도를 평정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파악함
- 위기 스크리닝 척도는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청소년위원회, 2005)에서 개발한 것을 원용함.
  - 위기 스크리닝 척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첫 번째 부분은 청소년의 위기 전조와 위기 표식에 해당하는 4개 영역의 위험요인들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부분은 심리적 및 외현적으로 드러난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구성됨.
  - 첫 번째 부분인 위험요인들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개 위험요인 영역은 개인영역, 가정영역, 또래 및 학교영역, 지역사회영역으로 이루어짐. 이들은 위기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청소년 개인과 그를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위험요인의 유무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성되었고, 이러한 위험요인들로 인해서 청소년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
  - 두 번째 부분은 청소년의 위기상태 및 문제행동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달적, 환경적 부적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중 9개 영역(가출, 약물사용, 신체적 성적 학대, 학업중단, 성매매, 인터넷 중독, 범법행위, 자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됨.
- 조사상담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뢰된 청소년에게 위기 스크리닝 척도를 실시함(약 20분 정도 소요). 위기 스크리닝 척도의 채점결과, 조사상담자는 **긴급위기사례**, **위기사례**, **일반사례**로 판정함. 긴급위기사례의 경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지체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례를 의미함. 위기사례의 경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가 결정됨. 일반사례의 경우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함.

## 2.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내용 및 전달체계

### 1) 지원의 종류

#### (1) 기초생활지원

본 지원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생활지원을 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과 의식주를 보장하고자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 중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성숙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초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지급기준은 청소년복지법 제 6조 2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 ○ 기초생활지원의 구체적 항목

- 의·식·주에 필요한 기초생계비(교통비 포함)
- 숙식제공 및 시설연계시 필요한 비용(컴터 등 생활시설 이용시 기관에 지원)
- 생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 (2) 건강지원

의료지원은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을 의미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중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이 정한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치료가 필요한 특별지원청소년 본인·가족·친지 또는 청소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① 보건에 관한 상담 ②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치료 및 지도 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

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건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보건복지부와와의 협약을 통해 의료급여법 상에 특별지원청소년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중대 질환 발생시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 건강지원의 구체적 항목

- 의료급여 혜택(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건강진단비용 등 예방 비용 포함)
-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치료
- 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의료기관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3) 학업지원

본 지원내용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특별지원청소년이 공평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업지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비를 말한다. 이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6조 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업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교육지원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학업지원의 구체적 항목

-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 학원비 등

(4) 자립지원

자립지원이란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체험 및 취업알선 등의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특별지원청소년의 직업체험·취업알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이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작업환경적응에 필요한 사후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로상담 및 지도가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진로·적성·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자립지원의 구체적 항목

-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적성·흥미검사비용 및 상담·교육비)
- 직업체험비용
- 직업 관련 프로그램 및 기관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비용(훈련기관 지원비, 훈련수당, 교통비, 식사비 등)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5) 상담지원

상담지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방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특수하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비용을 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상담지원의 구체적 항목

- 개인 및 가족상담비
- 심리검사비
-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6) 법률지원

법률지원은 위기상황의 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위기극복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판비용이나 변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이나 자원봉사 변호인을 이용하겠지만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도움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법률지원의 구체적 항목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 (7)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활동지원은 청소년활동(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을 의미한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의 활동참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체험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한다.

### ○ 청소년활동지원의 구체적 항목

- 수련활동비(캠프 등 수련활동 참여비용)
- 문화활동비(문화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의 입장료 등)
- 교류활동비(국내 및 국제교류시 필요한 비용 등)
-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기관 연계지원서비스 제공

## (8) 그 밖의 지원

그 밖의 지원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기타 비용 및 서비스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지원과 관련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표 IV-3〉 급여의 종류 요약

급여의 종류 (법 제12조 2항)	급여의 내용(시행령 제7조)	구체적인 급여 내용 (시행규칙 제7조)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시설연계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의·식·주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제공 및 시설연계시 필요한 비용(침대 등 생활시설 이용시 시설기관 지원)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의료급여 나.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건강진단비용 등 예방비용 포함) 다.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치료비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다. 학원비 등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교육비용을 포함) 나. 직업체험비용 다. 직업훈련비용(훈련기관 지원비, 훈련수당, 교통비, 식사비를 포함) 라.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개인 및 가족상담비 나. 심리검사비 다.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법률지원	위기상황의 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활동(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캠프 등 수련활동 참여비용)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의 입장료 등) 다. 교류활동비(국내 및 국제교류시 필요한 비용 등)
그 밖의 지원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기타 비용 및 서비스 지원	다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기타 비용

-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단위로 지원할 수 있음 (법 제12조의2의 1항)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시행령 제7조 3항). 또한 총 지원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함(시행령 제7조 4항).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있어 ‘중지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원대상자들의 의존성을 방지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한다(시행령 제4장 제10조).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조·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함 (법 제12조의2의 2항)
- 형평성의 원칙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률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시행규칙 제7조 2항)
- 대상 선정 시 긴급위기사례의 경우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므로 금전적지원이 아니라 서비스의 형태라면 “지체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또한 지체없이 지원결정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후승인 절차를 진행함(법 제13조 4항).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연장 결정,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친권자에게 비용의 징수 등을 심의 의결함.

## 2) 지원의 지급방식

### (1) 물품이나 용역지급의 우선원칙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각 지원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시행령 제7조 1항). 물품이나 용역으로 지원하는 경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이나 시설에 입금.
- 심의위원회가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할 수 있음(시행령 제7조 1항)
  - 가정내 청소년에게 금전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다만, 특별지원청소년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특별지원청소년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특별지원청소년이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청소년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특별지원청소년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대상 청소년을 입소시켜 금전 지원할 때에는 해당 보장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함(시행규칙 제7조 5항)
- 청소년의 특성 상 현금지원의 경우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가능하면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하여 용도제한(술, 담배, 유흥업소 등의 사용제한)이나 사용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직접적인 바우처 제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형태인 묵시적 바우처(implicit voucher)의 형식으로 선불카드를 발행함. 새로운 카드를 발행하기보다 청소년증에 부가기능으로 구성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청소년증은 할인혜택을 제공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선불카드처럼 현금을 충전할 수도 있음. 또한 이에는 전화카드기능, 버스 및 전철카드기능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음.

- 다양한 청소년할인 혜택을 함께 첨부한다면 일반청소년도 청소년증 이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 이용에 따른 낙인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경우 직접적인 바우처를 제공함. 이러한 바우처로 인해 어느 정도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며, 특별지원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함.

## (2) 금전급여의 장소

- 급여는 특별지원청소년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특별지원청소년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금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급여개시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 수시지급 가능
-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 달분 금전급여를 전액 지급
- 급여개시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 금전급여의 50% 지급

## (4) 급여 및 기타 정보 제공

특별지원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채팅, 이메일, 문자 정보 등을 통해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특별지원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특별지원청소년들에게 급여는 물론 진로, 교육, 일, 건강, 인간관계, 청소

년할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러한 정보 및 상담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성인기로 순조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3) 지원의 전달체계

- 읍·면·동, 시·군·구 : 급여신청 접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 초기 상담 및 위기 스크리닝 검사
- 시·군·구 : 1차 선정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최종 선정

### 4)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 (1)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 (법 제18조의 2)

##### 가.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

- 특별지원청소년의 분류 (긴급위기사례, 위기사례, 일반사례)
- 특별지원청소년 분류에 따른 적절한 지원내용의 결정
- 위급성 때문에 지체없이 지원 결정한 긴급위기사례의 경우 사후에 정식 지원대상 선정
- 지원연장 결정
- 가정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결정된 경우,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해당 청소년에게 제공할 지원내용 계획.
- 장기보호가 필요한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방향 논의

##### 나.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비용의 징수

-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 부양의무자에게 지원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 판단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징수비용 산출

다. 회복적 보호지원 선정 및 지원

- 비행이나 법률저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의 특별한 필요에 대응함으로서, 비행·범죄를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재통합 시키기 위한 ‘회복적 교육훈련’ 및 ‘회복적 처우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함

라. 그밖에 이법의 운용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고 안주하려고 하는 의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 중지심의 및 결정

(2)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법 제18조의 2), 부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국장 등이 됨.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전문가(지역교육청 및 지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청소년단체 및 시설·연구기관 등에서 청소년활동 및 연구 등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시행령 제 10조).

○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

○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운영되며, 사안에 따라 위급한 경우 2회 이상이 열릴 수도 있음. 이러한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소집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
-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3. 특별지원청소년의 관리

#### 1) 대상자 등록 및 정보보호

- 청소년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자 정보 및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내용 등의 정보 관리
  - 읍·면·동에서 청소년복지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청소년복지행정시스템(가칭, 이후 구축해야 함)에 등록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내용(보장 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사례관리자는 특별지원청소년에게 어떤 서비스와 금전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함. 시·군·구 공무원은 이를 행정시스템에 입력함.
  -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게 위탁될 가능성이 크므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민간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시스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의 행정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민간이 정부의 행정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움. 따라서 민간이 사례관리계획, 진행과정, 상담기록, 사례관리기록 등 사례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비밀누설의 금지(법 제18조의 5)
  - 조사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와 자료는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급여 결정 등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비밀을 누설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9조)

## 2) 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관리

### (1) 특별지원청소년 관리

- 특별지원청소년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지원변경, 지원중지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 청소년의 경우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며, 지원 결정 시 1년 단위로 지원된다고 내용을 전하기보다는 1년 이내에서 매 분기별 연장여부가 결정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임.

#### 가. 확인 대상

- 특별지원청소년의 수급자격 및 지원종류·금액, 관리 주체(해당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특별지원청소년의 거주지
  - 특별지원청소년의 생활실태
  - 특별지원청소년의 위기현황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소득·재산) 등

#### 나. 확인 방법

- 특별지원청소년의 신고의무 이행
- 특별지원청소년,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
- 보장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의 확인조사
-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 선정기준의 초과로 인하여 탈락한 자들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활용

- 아울러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부정적 상황으로 변경시 직권 조사를 통해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가능토록 함.

## (2) 급여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이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특별지원청소년에게 통지함.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월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적용

## (3) 급여의 중지예 따른 업무처리

### 가. 중지 사유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 특별지원청소년의 연령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 특별지원청소년이 긴급한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 특별지원청소년의 생활수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 특별지원청소년의 취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주거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특별지원청소년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특별지원청소년이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 나. 중지 시기

-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중지
  - 중지가 결정된 달은 시·군·구청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

다. 중지 절차

- 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청소년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
-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특별지원청소년에게 통지하여야 함

3) 부양의무자의 의무 확인

- 친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여를 제공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친권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법 제12조의3)

- 징수할 금액은 친권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친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1)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특별지원청소년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장기관이 선보호 조치한 경우

- 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특별지원청소년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특별지원청소년에게 정기적으로 금품(부양비)을 지원하지 않아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

(2) 보장비용의 징수 결정

- 보장비용 징수결정

- 특별지원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결정해야 함(법 제18조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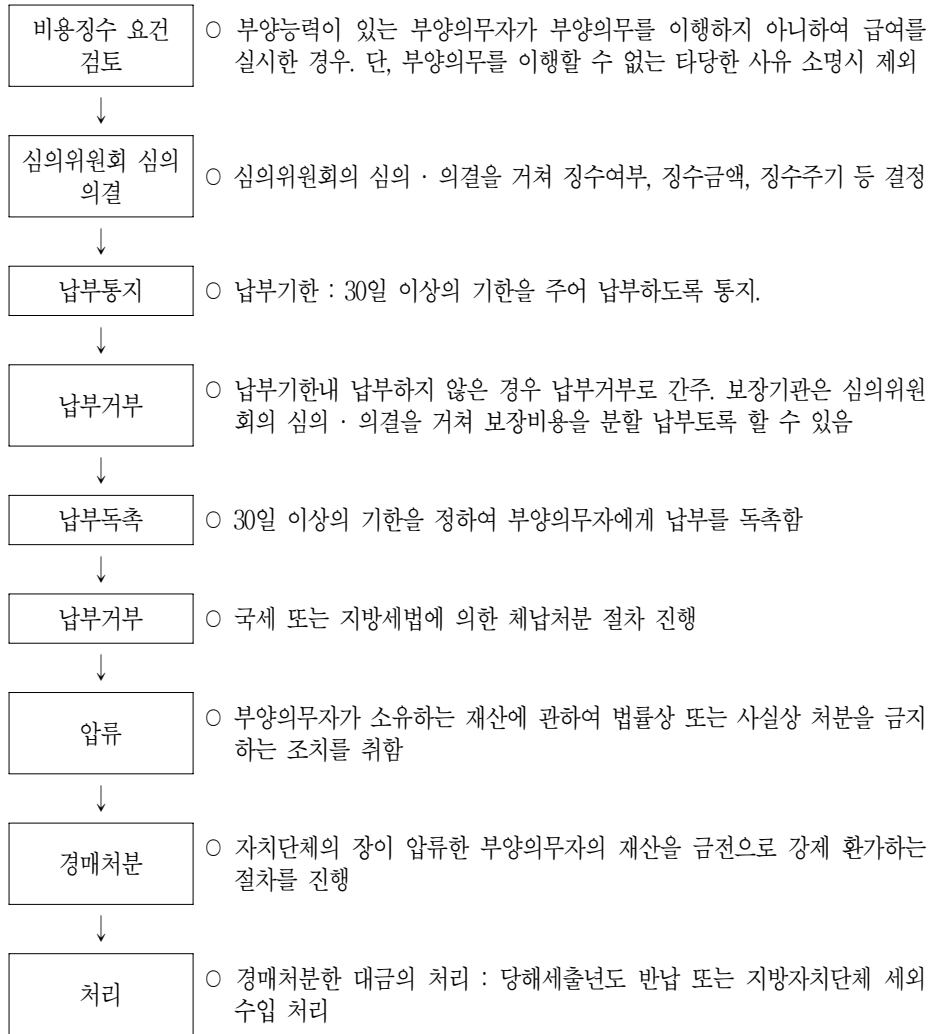
- 심의위원회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 여부, 징수 금액, 징수주기 등을 심의·의결함
  - 징수주기와 관련하여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보장비용 징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계속 불이행할 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기에 따라 징수절차를 재이행(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재의결 불필요)
- 징수금액의 산정
  -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3)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가.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장비용 징수결정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특별지원청소년과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지원청소년을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양자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나.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 (4)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 V. 결 론

1. 특별지원청소년 규모 및 지원 대상
2.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절차
3.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방법



## V. 결론

### 1. 특별지원청소년 규모 및 지원 대상

이 연구에서 현황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특별지원 청소년의 규모를 살펴보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 청소년의 경우에 2,820명<sup>1)</sup>으로 추정된다. 이를 서비스 내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생활지원 624건, 건강지원 1,856건, 학업지원 2,612건, 자립지원 3,128건, 상담지원 2,564건, 법률지원 324건, 청소년활동지원 2,864건, 기타 지원 104건 등 총 13,972건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충족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05명의 특별지원 대상이 한 가지 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대상이 705명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13,972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V-1> 서비스 내용별 지원대상

지원서비스	서비스종류	서비스 욕구(%)	충족률 (%)	미충족률 (%)	서비스 지원대상(건)
1. 생활지원	① 기초생계비용	25.0	15.9	84.1	592
	② 숙식제공	1.1	100	-	32
2. 건강지원 (의료지원)	① 의료급여	23.5	19.3	80.7	536
	② 보건 관련 상담 및 지도	30.8	7.8	92.2	800
	③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20.0	7.8	92.2	520
3. 학업지원	① 입학금 및 수업료	25.2	15.7	84.3	600
	② 교과서대· 학용품비	33.3	4.3	95.7	900
	③ 학원비 등	40.6	2.8	97.2	1,112

1) 분기별 인원이 705명이므로, 중복률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 연간 인원은 2,820명(705×4)으로 추정됨.

지원서비스	서비스종류	서비스 욕구(%)	충족율 (%)	미충족율 (%)	서비스 지원대상(건)
4. 자립지원 (직업훈련)	①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	38.4	10.7	89.3	968
	② 직업체험비용	25.7	2.2	97.8	708
	③ 직업훈련비용	28.0	2.5	97.5	768
	④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비용	25.1	3.4	96.6	684
5. 상담지원	① 개인 및 가족상담비	37.2	14.9	85.1	892
	② 심리검사비	31.6	14.8	85.2	760
	③ 상담관련 프로그램참가비	34.3	5.8	94.2	912
6.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5.5	5.1	94.9	148
	② 법률상담비용	6.4	2.2	97.8	176
7.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38.0	4.1	95.9	1,028
	② 문화활동비	39.1	4.3	95.7	1,056
	③ 교류활동비	24.4	1.7	98.3	676
8. 그 밖의 지원비용	기타비용	4.5	18.7	81.3	104
계					13,972

※ 서비스욕구(%)는 서비스 필요인원/전체인원(705명), 충족율(%)은 현재지원 받고 있는 인원/서비스 필요인원, 미충족율(%)은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은 인원/서비스 필요인원, 서비스지원 대상 건수는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4분기 합산 건수임.

## 2.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절차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절차는 최초 발굴에서 급여 신청, 기초생활실태조사, 상담 및 세부조사, 1차 선정,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최종선정, 수급자 관리의 단계를 거친다.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실태조사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청소년 담당 공무원은 해당기준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특별지원청소년의 신청을 접수한 후, 중복지원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및 선정기준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는지 등 기초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적합성을 조사한다.

상담 및 세부조사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의 지원 적합성을 기초 조사한 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상담 및 세부조사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하게 된다. 이때 조사상담 업무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하도록 한다. 이후 조사상담업무의 담당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이유 및 문제발생경위, 위기정도, 지원요청내용, 향후 계획 및 목표 등을 상담한 후 위기상황별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검토·중복수급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1차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조사기간은 15일 내로 하며, 서류 포함 검증은 30일 내로 하도록 한다.

또한 대상 선정 시 긴급위기사례의 경우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수 있는데 현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과해야 지원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개정 법률에서는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의 형태라면 “지체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우선 지원결정 이후 사후심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급성 때문에 지체없이 지원 결정한 경우 사후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연장 결정,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친권자에게 비용의 징수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시·군·구는 행정기관 내에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1차 선정과정에서 결정된 대상자들의 제반자료를 심의하여 최종 선정 대상과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월 1회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위급한 경우 2회 이상이 열릴 수도 있다. 이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될 것이며 부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국장 등이 될 것이다. 나머지 위원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다. 심의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청소년담당 과장이나 팀장 등이 될 것이며, 대상자와 위탁기관, 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 및 단체장에게 전달되며, 담당 공무원은 청소년 및 상담센터, 지원관련 기관에 지원내용을 통보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특별지원청소년 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회의 통보 관련 결재를 득한 뒤 해당 청소년에게 명시된 예산지원업무를 실시한다. 직접적 금전 지원과 관계없는 지원 실무와 관련하여 해당 상담원 및 상담센터의 담당자와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은 1년 이내로 실시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간에 지원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해당 관청 공무원은 지원관련 결산 처리 및 지원결과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후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는 해당 청소년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실질적이고 단일화된(one-stop) 지원서비스 제공 창구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담당자는 특별지원청소년 지원현황 대장을 작성·관리하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게 하기 위한 조정 역할 및

심리·사회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서비스 기관으로의 연계 의뢰 및 대상자 사후 관리 등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위탁 상담센터의 담당자는 청소년 개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도록 하며, 전체적인 조정자,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3.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방법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하면 각 지원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물품이나 용역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이나 시설에 입금한다.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특성 상 현금지원의 경우에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하여 용도 제한(술, 담배, 유흥업소 등의 사용제한)이나 사용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바우처 제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형태인 묵시적 바우처(implicit voucher)의 형식으로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새로운 카드를 발행하기보다 청소년증에 부가기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증은 할인혜택을 제공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선불카드처럼 현금을 충전할 수도 있다. 또한 이에는 전화카드기능, 버스 및 전철카드기능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다. 다양한 청소년할인 혜택을 함께 첨부한다면 일반청소년도 청소년증 이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 이용에 따른 낙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바우처로 인해 어느 정도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며, 특별지원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a).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개발연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b).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5).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법률개정안 설명자료.
- 김양곤 외(2005). 소년보호 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06). 2006년 아동보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서울 : 보건복지부·미래인력연구원.
- 윤철경 외(2005). 위기청소년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 :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2005). 한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지역사회협력체제. OECD 3차 회의 자료.
- 윤철경 외(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외(2006).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식(2006).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들의 검증에 관한 연구: 종단적 패널연구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pp. 5-34.
- 이성철(2002).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 이진국(2006). 소년 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pp. 67-98.
- 이창호 외(2005). 특별지원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순길 외(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 부 록

특별지원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4. 위기 유형? ( 복수 응답 가능)

- ① 가출      ② 학업중단      ③ 범죄피해      ④ 학교폭력피해  
⑤ 범죄      ⑥ 다문화가정      ⑦ 방임·학대      ⑧ 교정시설재소자자녀  
⑨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보호자에 관한 사항

5. 가족구성?

- ① 양친부모가정    ② 편모가정    ③ 편부가정    ④ 조부모가정    ⑤ 기타( )

6. 부모의 결혼상태?

- ① 결혼              ② 별거              ③ 이혼              ④ 사별              ⑤ 재혼-양부  
⑥ 재혼-양모              ⑦ 부모없음

7.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유무?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8. 보호자의 직업 유무?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9. 보호자의 부양능력?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0. 보호자의 방임 및 학대 여부?

- ① 매우 심한 편이다      ② 심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 편이다              ⑤ 전혀 없다

□ 청소년에 관한 사항

11. 주거형태?

- ① 월세      ② 전세      ③ 자가      ④ 시설거주      ⑤ 기타

12. 동거여부?(복수응답가능)

- ① 부모      ② 편부      ③ 편모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  
⑥ 친척      ⑦ 친구      ⑧ 애인      ⑨ 동거자없음      ⑩ 기타

13. 생활수준?

-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14. 생활비 조달방법?

- ① 아르바이트      ② 부모      ③ 친척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  
⑥ 친구      ⑦ 부정한 방법(절도 등)      ⑧ 없다      ⑨ 기타

15. 건강상태?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1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여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7.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시설보장의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  
 22. 현재 대상 청소년이 받고 있는 서비스와 지원기관, 그리고 현재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시와 같이 지원여부는 ○, ×로, 그리고 지원기관은 직접 그 명칭을 작성하십시오.

지원유형	서비스 종류	현재 받고 있는 지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여부	지원 기관	
1. 생활지원	① 의복, 음식물 등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용(단기) ② 숙식제공(증장기)			
2. 건강지원 (의료지원)	① 질병에 대한 의료급여 ②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건강진단비용 등 예방비용 포함) ③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①,②이외의 기타 포함)			
3. 학업지원	①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③ 학원비 등			
4. 자립지원 (직업훈련)	①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 (적성·흥미검사 및 상담·교육비용 포함) ② 직업체험비용 ③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 지원비, 훈련수당, 교통비, 식사비 포함) ④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비용			
5. 상담지원	① 개인 및 가족상담비 ② 심리검사비 ③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6.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7. 청소년활동 지원	① 수련활동비(캠프 등 수련활동 참가비용) ② 문화활동비(관람기관 입장료 등) ③ 교류활동비(국내 및 국제교류시 필요비용)			
8. 그 밖의 지원비용	17과 중복되지 않는 기타 비용			

※ 지원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에 한함.

※ 작성예시참조

지원유형	서비스 종류	현재 받고 있는 지원		필요한 서비스
		서비스	지원 기관	
1. 생활지원	① 의복, 음식물 등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용(단기)	○	국가 청소년 위원회	×
	② 숙식제공(중장기)	×	-	○
2. 건강지원 (의료지원)	① 질병에 대한 의료급여	○	복지부	×
	②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건강진단비용 등 예방비용 포함)	×	-	×
	③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①,②이외의 기타 포함)	×	-	○
3. 학업지원 · ·				

연구보고(수시과제) 07- 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인 쇄 2007년 11월 13일

발 행 2007년 11월 1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선명인쇄(주) 전화 (02)2268-474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79-9